

2022년도 제1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2. 3. 15.(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분과위원장), 김민아, 박정인, 임형주,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2-12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447건(안전번호 제2022-10218호~10664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2-10218호는 ■■■■ 클라우드에 프로그램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나,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이 삭제된 점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2-10219호~10234호는 ○○○○ 및 ■■■■ 블로그에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를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현재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로를 게시 중인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2-10235호~10244호는 ■■■■ 블로그에 영상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731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19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2-1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B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올라온 블로그를 확인해 보니 다른 불법복제물도 많이 게시되어 있음.
- 오진해 전문위원: 최근에 국내·외 클라우드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물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음.
- 권현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2-10218호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이 삭제되어 삭제·전송중단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B, D, E 위원 : 동의함.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10218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삭제된 점을 고려하여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2-10219호~10234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및 ■■■■ 블로그에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를 신고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지만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있는 ○○○○ 블로그인 ★★★★★★★★전체에 다수의 불법복제물이 게시되어 있음.
- A 위원: 이 정도면 형사고발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해 보임.
- B 위원: 해당 블로그에는 광고 또한 다수 게시되어 있음.
- E 위원: 시정권고의 검토시에도 대법원 판결과 같이 영리성과 계속성을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권현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2-10219호~10234호를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E 위원 :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10219호~1023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2-10235호~10244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

에 게시된 불법 복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C, D 위원 :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10235호~1024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2-10245호~10664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프로그램,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영화)덩케르크 (2017)'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2-10246호 '[중점](영화)덩케르크 (2017)' 는 2021. 7. 20. 개봉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450포인트에 배포중임.

([중점](영화)하우스 오브 구찌 (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2-10384호 '[중점](영화)하우스 오브 구찌 (2021)' 는 20

22. 11. 12.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370포인트에 배포중임.

(‘[중점](영화)미싱타는 여자들 (2020)’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2-10385호 ‘[중점](영화)미싱타는 여자들 (2020)’은 2022. 1. 20. 개봉한 한국 영화로 웹하드에서 160포인트에 판매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3건을 포함한 731건에 대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2-10245호~1066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B, C, D, E 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10245호~10664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2-10218호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안전번호 제2022-10219

호~10234호, 제2022-10235호~10244호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2-10245호~10664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1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1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3. 22.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김민아

위원 박정인

위원 임형주

위원 홍지만